

NEWS LETTER

2025-08-29

Legal Issue

-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소송 대법원 승소
- 개인정보 '이용'을 정의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MINWHO News

- 김경환 변호사, KAPP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 강연
- 법무법인 민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마이데이터 분야 전문가 이현승 변호사 영입
- 양진영 대표변호사, IAAE 심사원 양성과정 강연

Business CASE

Mi법무법인민후



Legal Issue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아기상어 판결, 퍼블릭 도메인 독점 위험 막은 의미 있는 판례”

김경환 대표변호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이 지닌 법적·산업적 의미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곡의 저작권 분쟁을 넘어, 구전가요와 같은 퍼블릭 도메인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전가요를 조금만 변형해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류 문화유산 전체를 사유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엄격히 차단했고, 앞으로 콘텐츠 산업에서도 창작성 인정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6년간의 긴 법정 공방이었다. 민후가 특히 중점을 둔 법리적 쟁점과 승소의 핵심 전략은.

▲가장 큰 쟁점은 원고의 편곡물이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다. 이를 위해 '구전가요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수십 개의 선행 자료를 수집하고, 음표·리듬·박자 단위로 비교·분석해 독창성이 없음을 입증했다. 또 창작성 인정이 남용될 경우 퍼블릭 도메인 독점이라는 사회적 해악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업계나 창작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편곡이나 미세한 변형만으로는 독창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개변', 즉 원곡과 직관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변주다. 반대로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활용하는 창작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창작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특히 AI가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활용해 음악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는 IT·콘텐츠 분야 전문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승소가 민후의 전문성과 '원펄 체제'의 강점을 어떻게 보여줬다고 보나.

▲민후는 설립 초기부터 IT와 저작권 분야 사건을 많이 다뤘었다. 영화 명량 사건, 오픈캡처 사건 등 굵직한 판례 경험이 이번 사건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 또 '원펄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 사건에는 전 인력이 협업해 대응한다. 리소스를 집중 투입해 치밀한 전략을 짤 수 있었고, 이런 구조적 장점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

-최근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민후가 앞으로 집중해 나갈 전략은.

▲AI 시대에는 창작과 저작권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결과물이 어떤 권리를 지니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민후는 해외 판례와 소송 동향을 면밀히 연구하며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AI 창작물, 글로벌 플랫폼을 둘러싼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개인정보 '이용'을 정의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김경환 대표변호사

6월 26일 대법원은 최초로 개인정보 '이용'을 개념정의한 판결을 선고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정의된 적이 없이 실무에서는 폭넓게 해석했으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개념정의를 한 것을 비롯,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시청해 교사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확인한 내역을 정리해 징계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 A씨는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 중 휴대폰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그 내용을 정리해 상급자에게 구두로 보고했고, 이는 해당 교사의 징계심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결국 A씨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심 법원은 A씨가 CCTV 영상 파일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파악한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즉, 전달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던 '이용'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며 법적 공백을 메웠다. 개인정보의 '이용'이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②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단순히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하거나 그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마치 기밀문서의 특정 내용을 베껴서 사용하는 것 또한 결국 기밀문서를 사용하는 행위인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조망했다. A씨가 보육교사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개인정보)을 시청하고, 그로부터 '휴대폰 사용 내역'이라는 정보를 추출·분석한 뒤, 이를 징계 자료로 삼기 위해 구두로 전달한 일련의 과정 전체가 결국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유형적 이용으로 한정되지 않고 무형적 이용(데이터에 담긴 내용이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행위)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판결은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단순히 원본 데이터의 사용에 한정하지 않고,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추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까지 폭넓게 인정했으며,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개인정보의 이용은 유형적 이용뿐만 아니라 무형적 이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용'의 범위의 확대는 위법한 '목적 외 이용'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바, 데이터의 분석 등 무형적 이용이 일상화되고 중요한 오늘날,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윤리 의식을 요구한다. 이제 기업과 기관들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본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무형적 이용이나 정보 추출은 없는지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양진영 대표변호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일부개정안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 7. 22.부터 시행된다(법률 제20694호 2025. 01. 21.).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등을 강화했다. 이하는 주요 개정안의 내용이다.

■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개선

□ 개정 요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승인이나 신고 없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 내용

제7조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의 근거에 관한 조항인데, 개정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동조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술안보센터'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제9조의2,3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및 말소에 관한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제9조의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법 제9조의2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의2 ①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업등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②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항).

개정법 제9조의3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은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했다(제9조의3 ①항).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9조 제①항 제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및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업등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을 신청한 기업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항).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제11조 ①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④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⑤).

제5항이 추가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이 명확히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㉔. ㉕항). 국가핵심기술의 사전승인 또는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㉕항).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조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안보 이외에도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도록 하였고(㉔항), 사전승인 대상 이외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산업기술보호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였다(㉔항). 또한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하여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등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㉕항).

제11조의3에서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㉔항).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개정 요지

산업기술 유출을 억제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였으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또한 처벌대상도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 내용

제14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조항 제2호는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에 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발생에 관한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유출하기만 하면 침해행위로 보았다.

제14조 제3호는 원래 6조의3호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 등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제14조는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제6호)를 추가하였다.

제14조의4로,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법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제22조의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배상액의 범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다(②항).

제36조 벌칙규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목적법 규정을 삭제하고, 고의범으로만 개정하여 가중처벌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벌금형의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였다(①항).

산업기술에 관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였다(②항).

이상과 같이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하였다.

앞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더욱 강화된 법적 규제와 행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 신청, 보유기관 등록,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신고 등에 관하여 여러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사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술유출 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술보호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등 예방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은 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유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산업현장에서도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및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국가 기술주권을 지켜나가기 바란다.



양진영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yangjy@minwho.kr

MINWHO NEWS

김경환 변호사, KAPP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 강연

김경환 변호사, KAPP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 강연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최근 법률신문 교육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마스터 과정'에서 강연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비롯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강연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사고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핵심 주제로 삼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 실무 담당자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들에게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연을 제공하여,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변화하는 법·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마이데이터 분야 전문가 이현승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민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마이데이터 분야 전문가 이현승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과 마이데이터 법제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춘 이현승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이현승 변호사는 IT 산업 현장과 연구기관, 법률 실무를 모두 아우른 경력을 바탕으로, SW 산업 진흥, 데이터 규제 대응, 디지털 정책 수립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법·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전문가로서, 산업 현장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는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포상을 수상했으며, SW 지식재산권, 마이데이터, 디지털통상 등을 주제로 공공기관·학계·산업계에서 활발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집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현승 변호사의 합류로 SW 지식재산권, 데이터 산업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등 첨단 ICT 분야의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과 기술 변화에 발맞춘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INWHO NEWS

양진영 대표변호사, IAAE 심사원 양성과정 강연

양진영 대표변호사, IAAE 심사원 양성과정 강연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2025년 7월 27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주관한 심사원 양성과정에서 'AI 관련 법률 해설'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양 변호사는 ① 주요 해외 AI 법제 동향, ② 인공지능기본법과 국내 관련 법률의 구조, ③ EU AI 기본법의 주요 조항과 시사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강연을 구성하였습니다.

수강자들은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지능형로봇법,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과 밀접히 연관되는 국내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규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 사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분쟁 예방 방법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강연에서는 EU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양 변호사는 AI 법제화의 선도 사례로 꼽히는 EU 입법 체계를 소개하며, 위험기반 접근 방식, AI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규제 등급별 의무사항 등을 해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법제와 비교했을 때 참고할 점과 주의할 점을 함께 짚어주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AI 법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관련 분쟁 해결과 정책 자문뿐 아니라 강연·세미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강연을 통해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법률 규제도 그 속도에 맞춰 발전하고 변화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관련 법제 연구와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업무사례

1. 본인 인증 문제로 인한 비트코인 인도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합의 도출
2. 디자인 무단사용으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승소
3. 건설사에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보수청구소송의 반소(손해배상)에 방어하여 반소 전부 기각 및 본소 승소(공사대금 지급 판결 도출)
4.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2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5. 정보탈취 및 무단 활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이끌어 승소
6. 소프트웨어 판매사의 라이선스 전환 정책 관련 대응 문서(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7. IT 플랫폼 기업의 자회사 대표이사 인수인계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8. 사진기자재 수입 유통사의 이미지 무단 도용에 대한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법적 대응 자문
9. 클라우드웍스 방화벽 등 보안장비 유지보수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10. 시스템 구축 도급계약에 따른 소스코드 귀속 분쟁 관련 대응 자문 제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